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덕수궁관리소]

2016. 5.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도록 발간 계약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시정)	3
2. 유물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5
3. ‘덕수궁 관람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시정)	6
4. 사적지 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주의)	7
5. 궁·능원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허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도상개선요구) ·	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덕수궁관리소는 사적 제124호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이 타버린 후 선조가 머무는 임시 궁궐로 시작되어 대한제국기 황궁의 위엄을 갖춘 궁궐로 정비되고 중명전, 정관헌 등 주요 전각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조전에 대한제국역사관이 재현되어 이에 대한 보존, 관리, 활용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덕수궁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총 96명(정규직 17명, 청원경찰 2명, 비정규직 77명)이고, 2016년 예산은 2,091백만 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예산집행, 업무지시 등)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주요 시설물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3. 7. 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5. 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덕수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록 발간 계약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덕수궁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의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도록' 발간에 대해 ●●●●●와 용역계약(계약기간 '15.9.7.~'15.12.16./계약금액 7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덕수궁관리소 감독·검사공무원은 계약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인 도록이 납품되지 않는 등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정당하게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납품은 '15.12.30.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산한 결과 2,625,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구분	계 약 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원)	계 약 자	지체 및 규격미달 등 현황	환수대상 금액(원)
용역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도록 발간	'15.9.7. ~'15.12.16. 75,000,000	●●●●●	14일 지체 납품	2,625,000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지체상금계산식 : 75,000,000원×0.0025×14일(2015.12.17. ~ 2015.12.30.)

조치할 사항

덕수궁관리소장은 ●●●●●로부터 2,625,000원의 지체상금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덕수궁관리소	★★사무관 ◇◇◇◇	'15.6.19.~현재.	검사공무원	덕수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연구사 ☆☆☆	'15.6.15.~현재.	감독공무원	덕수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유물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덕수궁관리소

내 용

덕수궁관리소는 ‘일월오악도병풍’ 등 총 24점의 유물을 소장·관리하며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제4조(유물대장)에 따라 유물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고, 궁 권역 내 석물 등 23건 42점, 주련 23점 및 대한제국역사관 내에 전시중인 탁자 등 118건 364점 [궁능문화재과(구입 69건)와 고궁박물관(28종 41점)으로부터 이관] 등 총 소장품 188건 453점을 관리하고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유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유물취급규정」 제8조에 따라 매년 1회(5월말) 소장유물에 대해 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년 6월 15일 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화전 내부 ‘일월오악도 병풍’ 앞 ‘어좌 및 곡병’에 대하여서는 유물의 보존가치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유물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또한 궁능문화재과가 구입하여 이관한 안락의자 등 69건에 대하여는 물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고궁박물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탁자 등 28종 41점에 대해서는 유물의 등급분류 등을 실시하여 유물로 관리함이 타당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소장품으로 수기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덕수궁관리소장은 미등재 된 유물 및 물품에 대해 유물 및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덕수궁 관람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덕수궁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 절차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를 확인·정산하고 그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덕수궁관리소에서는 '덕수궁 관람로 정비공사' [(2014.6.23.~7.2.)/18,993,600원/ (주)△△△△△△△△] 기존 포장재 철거에 대해 물량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계약내역서 상 1일(굴삭기 03W, 1일당 350,000원)로 계약된 내역을 작업여건 상 2일이 소요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2014.6.30.)하였고 납입 보험료의 확인·정산 없이 산재보험료 등(401,313원)을 포함하여 총 886,980원(원가계산 적용금액)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덕수궁관리소장은 (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및 보험금 886,98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에는 계약 및 감독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궁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사적지 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덕수궁관리소
내 용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②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사적 등)의 지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해당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를 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4년 실시한 ‘덕수궁 관람로 정비공사’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상기 법 조항을 적용하여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일반 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일반 업자가 시행한 공사 현황】

(단위:천원)

계약일자	사 업 명	공사내용	계약금액	시공자
2014.6.20.	덕수궁 관람로 정비공사	관람로 흙포장 등	19,800	(주)●●●●●●●●●●
2014.8.21.	덕수궁 시설물 도장 및 차마공사	중명전 정문도장, 샌드위치 판넬공사 등	12,000	▽▽▽▽

조치할 사항

덕수궁관리소장은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궁관리소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궁·능원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허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궁능문화재과 (덕수궁관리소)

내 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0호/2015.11.19. 개정)」 제32조(촬영에 대한 감독)에 의하면 “해당 유적관리기관이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의 납부사항
3.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4~2016년 자체종합감사일(2016.3.11.)까지 총 117건에 대해 「궁·능원 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 한 후 각 촬영허가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로 문화재전자행정(궁·능 유적 → 촬영 및 장소사용 → 모니터링 관리)에 촬영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입력·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어 규정으로 제정한 모니터링 보고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궁능문화재과장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촬영에 대한 감독 규정)에 대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문화재전자행정상 촬영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